

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4 .27.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5. 28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. 5. 28 제6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불분명한 조문을 명확히하고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신설.
(안제23조의3, 제39조의4 신설)
- 나.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세분화(안제22조)
- 다. 대부료의 납기를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농지수입금 확정후 6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
- 라. 수의매각 범위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농지 10,000㎡이하를 5년이상 실경작한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6,600㎡이하 폐천부지를 5년이상 실경작한 자에게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 이 가능하도록 규정
- 마. 관사의 종류중 실과소장 관사를 삭제하고 시설관리사 의사숙소

를 추가로 규정

4.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'98.9.16일 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, 외국인 투자에 대한 대부, 매각대상,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,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,
- 공유재산의 수의계약범위를 농지의 경우 실경작자, 폐천부지의 경우 점유자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수의계약 폭을 완화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,
- 조례 제50조에 규정된 실과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사의 사숙소를 포함하여 명문화 하였으며, 기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
- 본 조례안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타 자구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